



ISLAND OF GUAM
OFFICE OF THE GOVERNOR
HAGÁTÑA, GUAM 96932
U.S.A.

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코로나19) 대응을 위한 행정지시: No.2020-09

사회적 거리 지침 추가 사항 관련

- 2020년 3월 14일, 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(이하 코로나19)에 대응하기 위해 Organic Act of Guam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지시 2020-03를 통해 괌에 공중 보건 비상상태를 선포함.
- 공중 보건 비상상태 선포 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, 비 주요 행사 연기, 괌 입국자의 의무적 격리조치, 50명 이상의 행사 및 모임 취소 등 4개의 행정지시가 추가로 발표 되었음.
- 여러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4명의 시민이 사망함.
- 지역사회의 노력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었음이 통계적으로 증명됨.
- 여러 방면에서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욱 많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 수가 예측됨.
- 괌 정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계획 변경 추진이 필요함.
- 현 상황을 고려하여 2020년 4월 13일까지 유효한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을 필히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됨.

루 레온 게레로 괌 주지사는 Organic Act of Guam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은 지시를 공표함.

1. 공중보건 비상사태 연장

행정지시 No. 2020-03에 의해 발효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기존 2020년 4월 13일에서 30일 연장되어 2020년 5월 5일까지 유효함.

2. 사회적 모임 금지

제 10조 3항 3호 3317목에 의거하여 2020년 4월 5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 모든 유형(공적 및 사적)의 모임이 금지됨. 단 한 가정 및 직계가족의 모임은 해당되지 않음.

3.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소비 금지

2020년 4월 5일부터 2020년 5월 5일까지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주류 소비가 금지됨.

4. 시설물 및 자재에 관한 비상조치

모든 필수 사업장 및 정부 관련기관에서는 직원들 또는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함. 행정지시 No. 2020-05: 2항목의 사업장 운영 중지 방침에 준하여 비/필수 사업장은 괌 보건 사회 복지국(이하 DPHSS)이 공표한 지침아래 최대한 한정적으로 운영됨. 비필수 품목의 판매는 사업상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, 하기의 제 5항목에 따라 집행될 수 있음.



ISLAND OF GUAM
OFFICE OF THE GOVERNOR
HAGÁTÑA, GUAM 96932
U.S.A.

5. 시행

본 행정지시 No. 2020-03, 2020-04, 2020-05 또는 2020-06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이나 사업자는 벌금 또는 사업허가 해지를 받을 수 있음. DPHSS와 국세청(이하 DRT)은 본 행정지시를 집행할 것이며, 필요한 경우 광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집행할 수 있음.

6. 분리가능성

본 행정지시나 상기의 조항이 개인에게 유지되는 경우, 무효는 무효한 조항이나 적용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지시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, 이 목적을 위해 이 지시의 조항은 분리될 수 있음.

2020년 4월 5일 광 하갓냐에서 공표

루 레온 게레로
광 주지사